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주영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653 발의연월일: 2021. 3. 9.

발 의 자: 김주영·김승원·홍기원

조정식 · 박상혁 · 박대수

송옥주 • 전혜숙 • 이용우

강훈식 · 박홍근 · 임호선

이수진(비) · 양기대 의원

(14인)

제안이유

현행법은 농업·임업·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면제, 농어민의 융자·예금 등에 따른 인지세 면제, 농협중앙회 등의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제도를 적용하고 있으나, 동 제도는 2021년말로 종료될 예정임.

그러나 농촌인구의 지속적 감소 및 고령화(농가 고령화율 46.6%, '19년말 기준), 쌀 소비량 감소(1인당 연간 쌀 소비량 : 1990년 119.6kg → 2020년 57.7kg) 등 농업분야의 대내외적 여건 악화를 감안하면 농업부문 세제지원을 지속해야 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농업·임업·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등 일몰 기한을 3년간 연장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 및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에 기여하고자 함.

주요내용

- 가. 농업용·축산업용·임업용 또는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 로 3년 연장함(안 제105조제1항).
- 나. 농어민의 영농·영어비용 경감을 위해 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 가가치세 등 감면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함(안 제106조의2제1항).
- 다. 농어민 지원을 위해 농협 등 조합원의 융자서류·통장 등의 인지 세 면제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함(안 제116조제2항).
- 라.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이 제공하는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함(안 제121조의23제10항).

법률 제 호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"2022년 12월 31일"을 "2025년 12월 31일"로 한다.

제10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"2021년 12월 31일"을 "202 4년 12월 31일"로 한다.

제116조제2항제3호 중 "2021년 12월 31일"을 "2024년 12월 31일"로 한다.

제121조의23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2021년 12월 31일"을 "2024년 12월 31일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정 혂 했 개 아 제105조(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 제105조(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 용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용) ① -----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 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(零)의 세율을 적 용한다. 이 경우 제3호 및 제3 호의2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 고, 제5호 및 제6호는 2022년 1 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 2월 31일 -----해서만 적용한다. 1. ~ 6. (생략) 1. ~ 6. (현행과 같음) ② (생략) ② (현행과 같음) 제106조의2(농업 · 임업 · 어업용 | 제106조의2(농업 · 임업 · 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등) ① -----나에 해당하는 석유류(「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| 에 따른 석유제품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"면세유"라 한다)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와

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것에 대한 개별소비세, 교통·에너지·환경세, 교육세및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(이하 이 조에서 "자동차세"라 한다)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한다. 이 경우 제1호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것에만 적용하고, 제2호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것에만 적용한다.

- 1. · 2. (생략)
- ② ~ ② (생 략)
- 제116조(인지세의 면제) ① (생략)
 -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의 인지세 면제 기일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.
 - 1. 2. (생략)
 - 3. 제5호부터 제7호까지, 제9호,
 제11호 및 제19호는 2021년 1
 2월 31일까지 작성하는 과세
 문서에만 적용
 - 4. 5. (생략)

제121조의23(농업협동조합중앙회

<u>2024년 12월 31일</u>
−.
1. · 2. (현행과 같음)
② ~ ② (현행과 같음)
제116조(인지세의 면제) ① (생
략)
②
1. • 2. (현행과 같음)
3
<u>2024년</u>
<u>12월 31일</u>
4.·5. (현행과 같음)
4. 7. (234 年百)
제121주의23(농업현동주항중앙회

- ① ~ ⑨ (생 략)
- 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산용역에 대해서는 <u>2021년 12월 31일</u>까지 부가가 치세를 면제한다.
- 1. · 2. (생략)
- ① (생략)

- 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) 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)
 - ① ~ ⑨ (현행과 같음)

2024년 12월 31일-----

- 1. 2. (현행과 같음)
- ① (현행과 같음)